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2. 9. 28 선고 2022가단205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단체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9. 7.

판 결 선 고 2022. 9. 28.

주 문

1. 피고는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999. 4. 20. 접수 제57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박기범

별지